

속초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
----------	-----

제출년월일 : 1994. 4.

제출자 : 속초시장

□ 제안사유

- 현행 일반폐기물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내용이 통합되어 있는 속초시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 "폐기물 투기행위"와 관련하여 제정된 벌칙 적용기준이 폐기물관리법, 경범죄처벌법등 10개 법률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관련 벌칙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휴게소 영업자, 여객터미날업자,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사업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등)(안 제5조)
-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 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제한(안 제6조)
- 업무의 위탁 :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수 있음(안 제9조)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소 25천원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0천원까지 조정(안 제14조)

□ 참 부

- 시정조정위원회 부의결과 1부.
-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1부.

속초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함에 있어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일반폐기물 처리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속성을 감안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③ 제1항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음식물류등의 부패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파리, 모기등의 해충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재활용 일반폐기물·가연성 일반폐기물 및 불연성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시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속초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등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쓰레기발생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자의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집, 운반업체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법 제5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과태료처분 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고 100만원까지로 하며,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제1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 시세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 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5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50	5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 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같은법제17조 제1항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500	750	1,000
	3. 특정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 (법 제24조 제3항)	300	500	1,000
	4.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법 제41조)	300	5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 부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210mm × 297mm

(별지 제2호 시식)

(개인용지용)

계	호	과태료납부용지서
이반시청 :		
계 주 계		
납부	성	
의	명	
무	주	
지	수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나 에 납부하지가 미합
 1111

년 월 일

수납인부인

숙초시청

(수납은행보편용)

계	호	과태료납부서
이반시청 :		
계 주 계		
납부	성	
의	명	
무	주	
지	수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부인

(시, 군, 동부용)

계	호	영수증용지서
이반시청 :		
계 주 계		
납부	성	
의	명	
무	주	
지	수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불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부인

숙초시청 귀하

(개인용지용)

계	호	영 수 증
이반시청 :		
계 주 계		
납부	성	
의	명	
무	주	
지	수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부인

귀급자인

※ 과태료 지불에 이의가 있을지는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시청에 미리 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지가 미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 태 로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④ 과태로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로 금 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로 금액이 책정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210mm × 297mm

(신권용지 54g/㎡)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 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 (변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 소 (변경) 사유 :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210mm × 297mm

(신 권 용 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납부의무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부 과 기 관		⑦ 납부통지서 번호	
	⑤ 고지받은일자		⑧ 과 태 료 금 액	
	⑥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며 법원의 과태료 징수를 받도록 조치하시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 초 시 장 귀 하				

210mm x 297mm

(신권공지 54g/표)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속 초 시 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별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③ 주민등록 번 호
	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1 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